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5. 4 선고 2020가단326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계열, 이희창

변 론 종 결 2021. 4. 13.

판 결 선 고 2021. 5. 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양주시 E에 있는 F단지 G호에 관하여 2019. 10. 17. 체결된 증여계약과 포천시 H 토지에 관하여 2019. 11. 14.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 D에게 양주시 E에 있는 F단지 G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. 10. 17. 접수 제944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포천시 H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9. 11. 15. 접수

제404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8. 30. D과 오토론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140,000,000원을 연체이자율 14.4%,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.

나. D은 2019. 10. 7.부터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2020. 2. 19. 현재 원고는 D에 대하여 원금 119,902,039원, 이자 및 연체이자 4,038,928원 합계 123,940,96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.

다. D은 피고에게 2019. 10. 17. 양주시 E에 있는 F단지 G호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를 증여하고,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944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, 2019. 11. 14. 포천시 H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증여하고(이하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'이 사건 각 증여계약'이라 한다),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9. 11. 15. 접수 제40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'이 사건 각 이전등기'라 한다).

마.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 D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용인시 기흥구 I건물 J호 2억 5,000만 원1), ② 화성시 K건물 L호 1억 300만 원2), ③ 화성시 K건물 M호 1억 300만 원3), ④ 용인시 처인구 N 외 2필지 O건물 P호 9,700만 원4), ⑤ 덤프트럭 (차량번호 ① 생략) 3,300만 원5), ⑥ 덤프트럭 (차량번호 ② 생략) 7,400만 원, ⑦ (차량번호 ③ 생략) 7,100만 원 합계 7억 3,100만 원 및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가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는 ① Q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43,634,531원6), ②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9,902,039원, ③ 임차인 R에 대한 보증금 채무 85,000,000원, ④ 임차인 S에 대한 보증금 채무 85,000,000원, ⑤ 임차인 T에 대한 보증금 채무 20,000,000원7) 이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, 9, 13 내지 16호증, 을 제1 내지 4,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면 691,135,000원이었고, 소극재산은 858,058,000원이었으므로, D은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채무액 중 앞서 인정한 채무액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채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한편, 위 채무액의 합계는 453,536,570원에 불과하므로,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의해 이 사건 건물과 토지가 D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게 된다.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진우

1) 갑 제11호증 감정평가액

2) 을 제11호증 분양가, 통상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로 봄이 상당하다.

3) 을 제12호증 분양가

4) 을 제13호증 분양가

5) 피고 주장 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,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. 이하 다른
덤프트럭도 동일

6) 20. 4. 7. 현재의 채무액이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액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금액
상당으로 본다.

7) 을 제2호증의2